

202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21.

노 원 구 청



1. 고 시 명: 202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101-1(94.8㎡)
3. 지 정 사 유: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 시 일: 2026. 10. 21.
5. 지정대상지 내역 및 도면: 붙임 참조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6.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노원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 1부. 끝.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변경) 필지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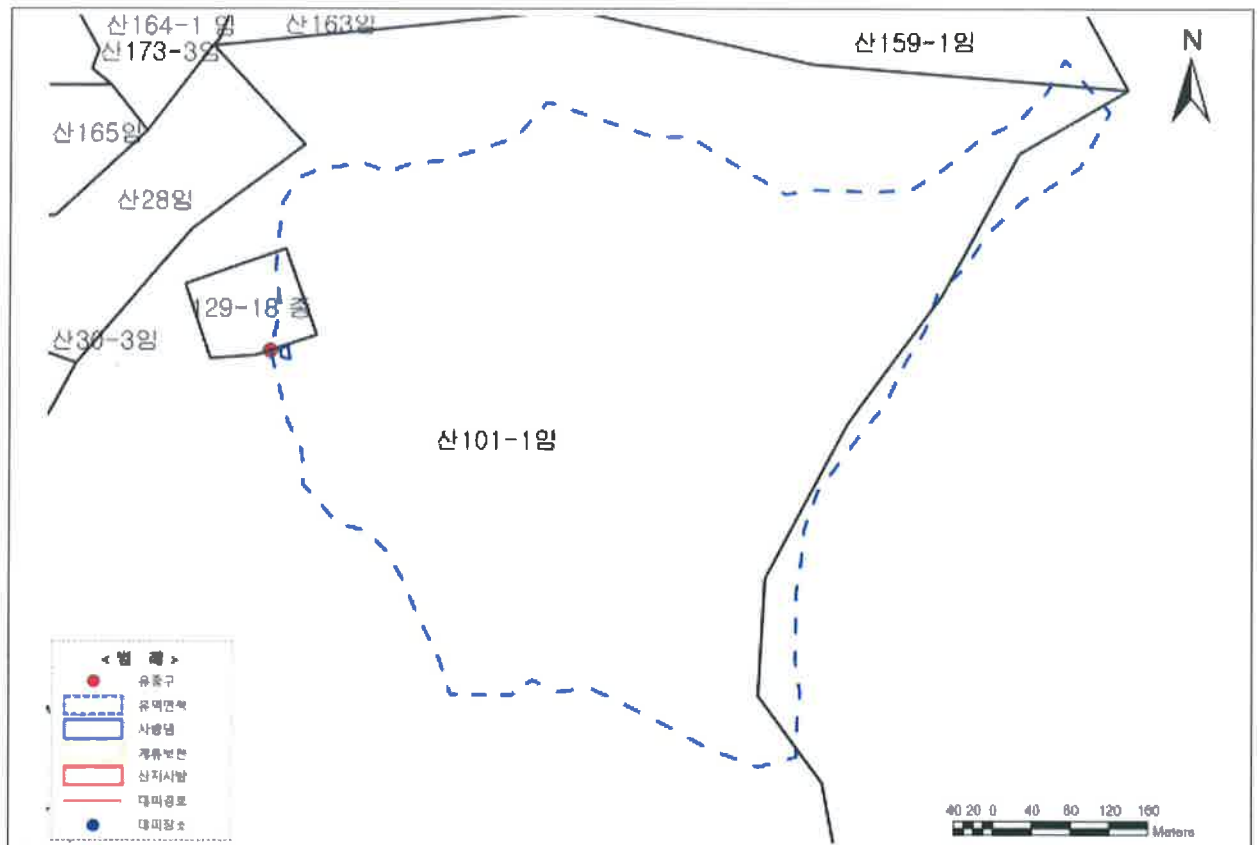
연번	산림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고 (도면번호)
	시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계						883,250	94.8			
1	서울	노원	중계	산101-1	임야	883,250	94.8	서울시 광진구 모진동 9*1	학*법*건*대*교	제2026-1호

<붙임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

번호: 2026년도 제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변경) 구역 도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 구, 동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고시번호 · 일자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101-1	임야	833,250	94.8	-
계			833,250	94.8	

〈붙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 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기한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조치 명령)

-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급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